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훈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5. 04. .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김동훈 의원 등 열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와 관광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 장애인・고령자・다자녀 가구의 관광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보편적 관광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광사업계획을 확대 수립(안 제4조)
(신설) 제1호 관광진흥을 위한 목표와 중·장기 전략
제7호 장애인·고령자·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 지원 사업

나. 관광사업계획 등의 심의·자문을 위한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안 제13조)

다. 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남양주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문화관광과

라. 입법예고 : 2025. 4. 4. ~ 2025. 4. 10. (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와 관광협의회를 신설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취약계층인 장애인·고령자·다자녀 가구의 관광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관광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관광사업계획에 관광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광진흥위원회 및 관광협의회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포용적 관광 정책이 실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1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고령자·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2024. 2. 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자녀가구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31.>

[시행일: 2025. 8. 1.]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24. 10. 22.>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시행일: 2025. 4. 23.]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붙임2 **비용추계 관련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참석 수당, 여비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2,500천원)

(단위: 천원)

사업명(문화관광과)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소요액	**1,250**	**2,500**	**2,500**	**2,500**	**2,500**
참석수당(12명)	1,200	2,400	2,400	2,400	2,400
참석실비(1명)	50	100	100	100	100

- 산출기초
  · 참석수당 : 12명 × 100천원 × 2회 = 2,400천원
  · 참석실비 : 1명 × 50천원 × 2회 = 100천원

○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조례 개정을 통해 남양주시 관광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수립 전이므로 예상되는 비용 및 경비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장 박선영